

부장판사 제도 운영 방식의 개혁에 관한 논의안 설명자료

안건 제안 위원: 김진석, 박균성, 오승이, 이광만, 최한돈 위원(가나다순)

1. 논의 필요성

▣ '사실상 직급'으로서의 부장판사 제도에 대한 비판

- 현행 법령상 판사를 '직급'으로 구분하지 않음에도 그 동안 사실상 '부장판사'를 직급처럼 운영함으로써, 법원이 관료화되게 하고 합의부의 대등한 합의를 저해해 왔다는 비판이 많았음
- 1994. 7. 27. 법원조직법 개정(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의 임용 요건을 폐지)으로 대법원장, 대법관과 판사 이외에는 직급이 없어진 것으로 이해됨
 - 1994. 7. 27. 법원조직법 개정이유: "공정하고 신속하면서도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재판 제도를 실현하고, 사법부의 민주화와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을 일대 개혁하려는 것임. 판사의 직급 중 고등법원장등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등의 직급을 폐지하여 법관에는 대법원장, 대법관과 판사의 직급만을 두도록 함"(출처: 法院組織法 일부개정 1994. 7. 27. [법률 제4765호, 시행 1995. 3. 1.] 대법원 > 종합법률정보 법령).
- 법원조직법 제27조 제2항에서 고등법원에 관하여 '부에 부장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38조, 제40조의3, 제40조의6 등에서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에 관하여 위 제27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보직 개념으로 이해됨.
- 현재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보임하고 있어 단독 재판을 맡고 있는 부장판사도 많은바, 현재의 부장판사는 보직으로서의 부장판사로 보임될 수 있고 '재판장이 아닌 합의부원'(종래 배석판사로 호칭했으나, 이는 법령상의 용어가 아니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함)을 면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 정도의 의미로 이해됨.
- 부장판사를 위와 같이 일종의 자격처럼 이해되도록 하는 것은 부장판사를 사실상 '직급'으로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임. '직급'이라는 용어는 이른바 하방 경직, 승급 등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 법원조직법 등 법령의 취지상 판사가 다른 판

사보다 직급이 높은 판사라고 오인되도록 하는 것은 합의부의 대등한 합의를 구현해야 하는 측면, 법원 내 민주적 의사 결정 측면, 법원의 관료화 방지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함. 법원 내규 등에도 마치 '부장판사'가 직급인 것처럼 생각하여 '직급별' 판사회의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단의 2018. 4. 27. 대법원장 면담 당시 다음과 같은 의견이 건의됨(2018. 4. 30. 코트넷 게시판)

현행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전보명령은 실질적인 직급제로 운영되고 있다. 2019년부터 종전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명령을 중단하면 지방권 고등법원에 재판장 공석이 발생한다고 보는 법원행정처의 시각도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직급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고, 제1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때 인사총괄심의관의 보고 내용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면배석 정도의 의미로 보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고등법원이든 지방법원이든 부장판사를 직급으로 이해하게 되면 실질적인 대등재판부 구성 등 다양한 합의부 구성이 어렵게 되고, 무엇보다 법원조직법의 취지에 반한다.

고등법원판사와 지방법원 배석판사의 재판장 보임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불만이나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변론재판부 재판장 기회가 점차 줄고 있다는 지적도 모두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장판사는 합의부 재판장에 보임된 그 시기에 한하여 인정되는 순수한 보직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현행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지방법원 부장판사로만 합의부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합의부 구성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종전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비하여 가중되는 업무상 부담 등은 재판연구원의 조력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 등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한다.

■ 법관의 인사시스템 변화

- 법조일원화·평생법관제 등의 정착 등으로 법관의 인사시스템이 많이 변화되고 있음
⇒ 기존 합의부의 교육적 기능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고, 재판장이 아닌 합의부원으로서의 근무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단독 재판을 맡는 부장판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남
- 법원조직법상 법관 임용자격의 변화
 -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 임용 시 3년 이상
 - 2018. 1. 1.부터 2021. 12. 31.까지 임용 시 5년 이상
 - 2022. 1. 1.부터 2025. 12. 31.까지 임용 시 7년 이상

- 2026. 1. 1. 이후 임용 시 10년 이상

- 기존의 부장판사 제도 운영 방식은 변화되고 있는 법관의 인사시스템과 맞지 아니함

■ 소결론

- 따라서 부장판사 제도 운영 방식의 개혁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2. 논의할 사항의 구체적 취지와 내용

가. 논의 안건 제안의 배경과 취지

■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는 폐지하기로 정책 결정이 되어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법원조직법 개정안 요지: 법원조직법 제27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중 "부장판사는"을 "부의 구성원 중 1인은"으로 한다.

■ 지방법원 부장판사 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 2018. 9. 2. 게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의 설문조사 중 2-4항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보임하여 일종의 ‘직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일정기간 후에는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관하여 법관들 다수가 동의함

- ‘동의한다’는 의견이 29.53%, ‘동의하는 편이다’는 의견이 25.13%,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는 의견이 21.03%,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22.73%로서 동의와 동의하는 편의 의견 합계 54.66%임

- 위 설문조사 중 2-5항 “지방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2025년 이후가 다수 의견임

- 2020년 24.18%, 2021년 5.10%, 2023년 10.33%, 2025년 41.56%

- 현재 지방법원 부장판사인 판사, 조만간 부장판사가 될 판사, 부장판사가 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판사 등 자신이 처한 위치에 따라 의견이 나뉠 수 있으므로,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위한 바람직한 인사 제도가 무엇인가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정책 결정을 하고 구체적인 로드맵,

경과 규정 등을 설정하여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법원 구성원들이 향후의 제도 변화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함

나. 논의 안건의 구체적 내용

▣ '부장판사 제도 운영 방식의 개혁'에 관하여 분과위원회에 연구·검토 안건으로 회부할 것인지 여부

- '부장판사 제도 운영 방식의 개혁' 필요성, 방법, 내용, 절차와 과정, 관련 문제점 등에 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고,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과 재판 관련 당사자, 변호사, 재판을 받는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부장판사 제도 운영 방식은 법관인사분과위원회와 주로 관련되지만 부장판사를 두지 않는 경우의 합의부 운영과 관련하여 재판제도분과위원회와도 관련된다고 보이므로, 위 두 분과위원회에 대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연구·검토할 안건으로 회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연구·검토 시한은 2020. 6. 30.경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됨

▣ 향후 예상 절차

- 법관인사분과위원회와 재판제도분과위원회의 연구·검토 의견 등을 토대로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논의 후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거친 다음 정책 결정 권고안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끝